

종합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026년 경상북도안동의료원 —

2026. 5.



□ 처분요구일람표

1.	채용업무처리 부적정 (시정)	1
2.	면세사업자 계약금액 미조정 (주의)	6
3.	◆◆◆◆ 인력운영 부적정 (시정)	9
4.	♥♥♥♥ ◎◎◎◎ 자부담 사업비 관리 부적정 (주의)	15
5.	마약류 관리 업무 부적정 (시정)	18
6.	겸직 허가 및 복무관리 업무 부적정 (시정)	22
7.	진료비 미수금 징수 관리 소홀 (시정)	27
8.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부적정 (주의)	30
9.	소규모 공사 계약 추진 부적정 (주의)	33
10.	건설공사 감독 및 준공 업무 부적정 (주의)	38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채용업무처리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안동의료원
관 계 부 서 ○○○○○
내 용

경상북도안동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에서는 직원 채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2023년 10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총 90차례의 채용공고 등을 하여 직원 164명을 채용하였다.

1. 병역 미필자에 대한 응시 부당 제한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Ⅲ. 직원의 인사, ① 신규채용 및 의료원 「인사규정」 제17조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서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의료원은 직원을 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병역 등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의료원은 직원 채용을 총 64차례 실시하면서 공고문 응시 자격 요건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었다.

그 결과 의료원은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남성의 응시 기회를 부당하게 제한함으로써 채용 기회의 형평성을 저해하였다.

2. 동일 채용시험 전형단계별 심사위원 중복 위촉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Ⅲ. 직원의 인사, ④ 시험의 방법에 따르면 동일한 채용시험에서는 필기시험 출제·채점위원, 면접시험위원, 서류전형 시험위원을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의료원은 동일한 채용시험에서는 전형단계별 심사위원을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다.

그런데 의료원은 직원 채용을 총 55차례 실시하면서 동일한 채용시험에서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심사위원을 중복하여 운영하였다.

그 결과 특정 위원에 의한 평가 영향력이 과도하게 반영될 우려가 있는 등 채용 절차 전반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시험위원 외부 전문가 참여 미충족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Ⅲ. 직원의 인사, ④ 시험의 방법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채용을 위한 필기시험의 과목별 출제·채점 및 면접 시험 시(서류전형 포함) 채용규모, 심사기준의 구체성 등을 감안하여 외부 전문

위원을 2분의 1 이상 참여시켜 시험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다만, 서류전형에서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내부위원만으로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의료원은 서류전형에서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내부위원만으로도 가능하나 면접전형인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2분의 1 이상 시험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의료원은 공고일 24. 2. 20. 보건8급 직원 채용공고 등 총 4차례 직원 채용을 실시하면서 면접전형 시 시험위원으로 외부전문가를 2분의 1이상을 위촉하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시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내부위원 중심으로 시험이 운영됨에 따라 채용절차의 투명성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채용 관련 내부 규정 정비 소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Ⅲ. 직원의 인사, ① 신규채용 및 ③ 채용시험의 공고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시험의 요건,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는 자체 인사규정으로 정하되, 개별 채용별로 그 절차와 방법을 기관장 등이 달리 정하도록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채용공고 내용에 가점 기준 등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지침 Ⅲ. 직원의 인사, ④ 시험의 방법에 따르면 예비합격자 제도의 시행에 관한 세부 내용은 내부 인사규정으로 정하여야 하며, 예비합격자 제도를 시행하는 채용시험의 경우 그 취지와 예비합격자 규모, 유효기간 등 주요 내용을 채용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만점의 10%¹⁾ 또는 5%²⁾를 가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31조 제3항·제4항에 따르면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시험방법, 가산점, 예비합격자에 관하여는 자체 인사규정으로 정하여야 하고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해당 법에 따른 가점기준으로 공고하여야 하고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의료원은 2025. 3. 5. 간호직 채용 공고에서 면접점수(15점 만점)가 9점 이하인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나, 자체 인사규정에는 면접 점수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인사규칙」 제10조 제2항에서는 면접점수 평균이 1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고 내용과 다소 상이 하다.

그리고 채용공고에는 제출서류로 가점 대상자(장애인, 보훈대상자)만을 명시 하고 있을 뿐, 가점 배점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며, 인사규정 및 채용 계획에도 이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등

2)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의 배우자 등

특히,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해야 함에도, 2025. 3. 5. 간호직 채용 공고 등에서는 면접 시험 점수가 동점(소수점 1자리까지)일 경우 평가 항목 순위에 따라 고득점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법령과 상이하다.

또한 2025. 3. 5. 간호직 채용 공고 등에서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내에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예비합격자 제도 운영은 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사항이 인사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 결과 면접점수 및 가산점 부여 기준, 동점자 처리 방법, 예비합격자 등 채용 방법이 명확히 자체규정에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용이 이루어짐에 따라 평가의 일관성과 객관성이 저해되었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안동의료원장은

- ① 병역 미필자에 대한 응시 부당 제한, 동일 채용시험의 전형단계별 심사위원 중복 위촉, 시험위원 외부 전문가 참여 비율을 미충족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면접점수 및 가산점 부여 기준, 동점자 처리 방법, 예비합격자 등 채용 관련 사항을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 자체 규정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 ③ 관련자 AAA, BBB, CCC, DDD은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면세사업자 계약금액 미조정
소 관 청 경상북도안동의료원
관 계 부 서 ○ ○ ○ ○ ○
내 용

경상북도안동의료원(이하 “의료원”라 한다)는 □□□□ 운영을 위하여 △△용품(◇◇◇◇) 구매 계약을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으로 매년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제2절, 5, 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입찰이나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액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1. 나. 9)에 따르면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시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용역·물품은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제5절. 제1관. 4. 라.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와 과세되는 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되, 면세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입찰공고문 및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의료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와 과세되는 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안내공고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하고 면세업체와 계약체결 시에는 업체가 제출한 견적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공고문에 포함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의료원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2024년 및 2025년에 ‘△△용품(◇◇◇◇◇◇) 구매’를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으로 공고하면서 공고내용에 기초 금액은 부가세포함으로 명시하면서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에는 계약금액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조정한다고 안내하지 않았다.

[표] 면세사업자 계약 및 대금 지급 현황

(단위 : 원)

계약명	계약기간	업체명	지출금액	부당지급 (부가가치세)
계			48,748,020	4,431,638
△△용품(◇◇◇◇◇◇) 구매	2024. 1. 1. ~ 2024. 12. 31.	☆☆☆☆☆	21,493,540	1,953,958
△△용품(◇◇◇◇◇◇) 구매	2025. 1. 1 ~ 2025. 12. 31.	▽▽▽▽	27,254,480	2,477,680

※ 의료원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가 면세사업자인데도 업체가 제출한 견적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조정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48,748,020원으로 계약체결 하였고 계약금액 그대로 대금 지급하여 면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4,431,638원이 부적정하게 지급되었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안동의료원장은

- ① 앞으로 면세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입찰공고문 및 계약내용에 포함하는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관련자 EEE을 **훈계**(의료원 규정상 경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인력운영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안동의료원
관 계 부 서 ○○○○○, □□□□□
내 용

경상북도안동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에서는 ■■■■■■ 4명이 ▽▽ 행사, ▽▽용품 관리, ◆◆ 예약 등 ◆◆◆◆ 전반을 운영하고 있다.

1. 근로시간 부적정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제2항 및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같은법 제59조 제1항에 따르면 보건업 등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등을 이행

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보건업 등 특례업종에 해당되더라도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야 하며 근로자가 이를 원하더라도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근로조건을 적정하게 유지 및 개선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의료원에서는 2018. 6. 29. 근로자대표와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와 관련하여 근로시간 특례업종(보건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업무상 필요 시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고 합의하였다.

그런데 의료원에서는 ♀♀직의 경우에는 2018. 8. 31. 노사협의회를 거쳐 3교대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조정하고 2019. 1. 1.부터 시행하였으나 ◆◆◆◆ 운영 인력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전부터(날짜미상) [표]와 같이 8일 주기로 당직근무(9:00 ~ 다음날 9:00) 2회, 주간근무(9:00 ~ 17:00) 2회, 오전근무(9:00 ~ 12:30) 2회를 반복하게 하였다.

이는 근로자가 원한다는 사유로 장시간 근로를 지속하게 하여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를 유발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 근무 현황³⁾

구 분	근무자 A	근무자 B	근무자 C	근무자 D
1일차	당직 (9:00 ~ 9:00)	주간(9:00~17:00)	당직(~9:00)	오전(9:00~12:30)
2일차		당직 (9:00 ~ 9:00)	주간(9:00~17:00)	오전(9:00~12:30)
3일차	오전(9:00~12:30)		주간(9:00~17:00)	당직 (9:00 ~ 9:00)
4일차	오전(9:00~12:30)	주간(9:00~17:00)		당직

3) ◆◆◆◆근무는 8일 주기로 당직근무(근무 21시간, 휴게 3시간, 9:00~9:00) 2번, 오전근무(3시간 30분, 9:00~12:30) 2번, 주간근무(7시간, 휴게 1시간, 9:00~17:00) 2번을 하고 있음. 8일간 근무시간은 총 63시간으로 근로시간 38.5시간, 연장시간 24.5시간임. 통상 오전 근무일에는 연가를 사용하여 휴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음.

구 분	근무자 A	근무자 B	근무자 C	근무자 D
5일차	주간(9:00~17:00)	당직 (9:00 ~ 9:00)	오전(9:00~12:30)	(9:00 ~ 9:00)
6일차	당직 (9:00 ~ 9:00)		오전(9:00~12:30)	주간(9:00~17:00)
7일차		오전(9:00~12:30)	주간(9:00~17:00)	당직 (9:00 ~ 9:00)
8일차	주간(9:00~17:00)	오전(9:00~12:30)	당직(9:00 ~)	

※ 의료원 제출자료 재구성

2. 주당 근무시간 인건비 산출 부적정

의료원 「복무규정」 제12조(개정 2004. 7. 1., 개정 2018. 3. 2.)에 따르면 직원의 근무시간은 1주간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안동의료원에서는 ○○부 ■■■■■ ☆☆☆ ∇급 ♣♣♣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은 2020년 8월 1일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하고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으로 명시하였다.

따라서 ☆☆☆ ∇급 ♣♣♣를 포함한 ■■■■■ 4명의 인건비를 산출할 시에는 1주간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그 외 근무에 대해서는 초과근무 등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그런데 의료원에서는 2004. 7. 1. 근로시간이 주당 40시간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 ■■■■■ ♣♣♣ 등 4명에 대해 인건비 산출 시에 근로시간을 38.5시간으로 하고 나머지를 초과근무수당으로 계산하여 2018. 3. 2.부터 현재까지도 과다 지급하고 있다.

3. 무단결근, 조기퇴근 복무 태만

의료원 「복무규정」 제17조에 따르면 직원은 근무시간 시작 전에 출근하여야 하고 상병 기타의 사유로 출근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정오까지

신고가 없을 때에는 결근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규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르면 직원이 조퇴 또는 외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관리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업무 이외의 사유로 근무지를 임의 이탈할 수 없으며 휴가를 득하거나 정당한 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결근하였을 때에는 무단결근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의료원 「보수규정」 제14조 제3항에 따르면 임직원 복무규정에 의한 연차휴가, 병가, 청원휴가, 포상휴가, 특별휴가를 제외하고 결근한 자에게는 매결근 1일에 대하여 보수 일액의 3분의 2를 감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직 ◇급 ♣♣♣는 2026. 2. 14. 주간 근무(9:00 ~ 17:00)임에도 불구하고 8:45에 출근하여 9:58에 관리자의 사전 허가없이 퇴근 하는 등 ◆◆◆◆ 운영 인력 4명은 2026. 2. 7.부터 같은 해 3. 1.까지 [표 1]과 같이 5건의 무단결근, 5건의 무단조퇴를 하였다.

[표 1] ◆◆◆◆ 근무자 무단이탈 현황

성 명	근무일자	근무시간	실제근무시간	무단이탈시간	비고
♣♣♣	2026. 2. 14.	9:00 ~ 17:00	8:45 ~ 9:58	9:59 ~ 17:00	무단조퇴
	2026. 2. 17.	9:00 ~ 17:00	-	9:00 ~ 17:00	무단결근
	2026. 2. 22.	9:00 ~ 17:00	8:54 ~ 11:56	11:57 ~ 17:00	무단조퇴
◇◇◇	2026. 2. 7.	9:00 ~ 17:00	8:52 ~ 9:30	9:31 ~ 17:00	무단조퇴
	2026. 2. 15.	9:00 ~ 17:00	-	9:00 ~ 17:00	무단결근
♠♠♠	2026. 2. 8.	9:00 ~ 17:00	-	9:00 ~ 17:00	무단결근
	2026. 2. 16.	9:00 ~ 17:00	-	9:00 ~ 17:00	무단결근
♣♣♣	2026. 2. 18.	9:00 ~ 17:00	-	9:00 ~ 17:00	무단결근
	2026. 2. 21.	9:00 ~ 17:00	8:53 ~ 9:01	9:02 ~ 17:00	무단조퇴
	2026. 3. 1.	9:00 ~ 17:00	8:53 ~ 10:03	10:04 ~ 17:00	무단조퇴

※ 의료원 제출자료 재구성

한편, ◆◆◆◆ ☆☆☆직 ◇급 ♣♣♣ 등 ■■■■■■ 4명은 문답 시에 사실무근

이라고 하였으나 CCTV 확인 결과, 출근한 내역이 없거나 근무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나간 후 다시 들어오는 장면을 확인 할 수가 없었다.

또한 근무하였다는 증거자료로 교통카드 및 편의점 등 결제 내역, 통신사 위치정보가 있는 통화내역, 구글 위치정보, 블랙박스 정보 등을 요청하였으나 제출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 인해 ☆☆☆직 ◇급 ♣♣♣ 등 4명은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에 따라 [표 2]와 같이 보수를 1,602,400원을 과다 수령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2] 무단결근 등에 따른 보수 과다 수령 내역

성 명	근무일자	무단이탈 시간	보수 과다지급 내역			
			기본급	직급보조비	기타	계
합 계			546,210	31,430	1,024,760	1,602,400
♣♣♣	2026. 2. 14.	9:59 ~ 17:00	93,220	5,140	11,110	109,470
	2026. 2. 17.	9:00 ~ 17:00			215,590	215,590
	2026. 2. 22.	11:57 ~ 17:00	67,670	3,460	7,490	78,620
◇◇◇	2026. 2. 7.	9:31 ~ 17:00	90,560	5,540	9,110	105,210
	2026. 2. 15.	9:00 ~ 17:00	97,530	5,960	123,110	226,600
♠♠♠	2026. 2. 8.	9:00 ~ 17:00	116,480	5,960	146,680	269,120
	2026. 2. 16.	9:00 ~ 17:00			215,590	215,590
♣♣♣	2026. 2. 18.	9:00 ~ 17:00			154,130	154,130
	2026. 2. 21.	9:02 ~ 17:00	80,750	5,370	10,930	97,050
	2026. 3. 1.	9:00 ~ 17:00			131,020	131,020

※ 의료원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안동의료원장은

- ① 관련 직원으로부터 과다 지급된 보수 1,602,400원을 회수하여 세입조치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②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 근무체계를 전면 재검토하여 과도한 장시간 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③ ■■■■■ 4명에 대해 최근 1년간 복무실태를 점검하시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통보)

④ 관련자 FFF, GGG, HHH, III는 경징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징계)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 ○○○○ 자부담 사업비 관리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안동의료원
관 계 부 서 ○○○○○, △△△△△
내 용

경상북도안동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에서는 2024년 및 2025년도에 경북도로부터 ‘♥♥♥♥♥ ○○○○4’ 사업을 수탁받아 아래 [표]와 같이 도비 및 자부담 사업비의 지출 업무를 수행하였다.

[표] 2024년도 및 2025년도 ‘♥♥♥♥♥ ○○○○ 사업’ 계획

(단위: 천원)

구 분	사업기간	사 업 비		
		계	도비	자부담 ⁵⁾
2024년	2024. 1. 1. ~ 2024. 12. 31.	125,159	90,000	35,159
2025년	2025. 1. 1. ~ 2025. 12. 31.	173,121	90,000	83,121

※ 의료원에서 경북도에 신청한 사업계획(안) 자료 추출

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 V. 예산 집행기준, 2. 주요 항목별 집행지침, ⑤ 기타에 따르면 본 지침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4) 경북도내 농촌 오·벽지 7개 지역(안동, 영주, 봉화, 청송, 영양, 예천, 의성) 주민을 직접 찾아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5) 자부담 사업비는 ‘♥♥♥♥♥ ○○○○’ 사업부서인 ○○○○부에서 △△△△부 ○○팀에 요청하여 2024년도에는 34,300,520원, 2025년도에는 87,616,150원을 각각 해당연도의 사업비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였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시행 24. 9. 23.) [별표3] 지방자치단체 보통예금계좌 관리기준에 따르면 불가피하게 사업운영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 회계업무담당부서는 운영목적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 최소한으로 승인·관리하며 실물통장, 통장직인(도장)은 지출원 또는 출납원의 책임으로 관리·보관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계좌가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을 위해 사업부서장은 분기별 1회 이상 해당 부서 보통예금계좌를 점검하고 그 결과 계좌가 불필요하거나 유사 사업 등으로 통·폐합이 필요한 경우 즉시 계좌를 해지하거나 통·폐합 한 후 회계 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회계부서장은 반기별 1회 이상 보통예금 계좌를 점검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회계책임관은 금고와 협의 등을 통해 인터넷·모바일을 통해 출금이 가능한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서비스를 사용금지 하는 등 해당 기관에 적합한 계좌관리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운영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의료원은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할 때에는 회계업무담당부서는 필요 최소한으로 승인·관리하여야 하고 실물통장, 통장직인(도장)은 지출원 또는 출납원의 책임으로 관리·보관하고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서비스를 사용금지 하는 등 해당 기관에 적합한 계좌관리 방안을 마련·운영하여 사업부서장은 분기별 1회 이상, 회계부서장은 반기별 1회 이상 보통예금계좌를 점검하여야 했다.

그런데 의료원에서는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을 지출원 또는 출납원의 책임으로 관리하지 않고 ○○○○부 사업담당자인 △△직 ♣♣♣가 계좌별로 인증서를 발급받아 인터넷뱅킹을 통해 지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부장 및 △△△△부장은 해당 보통예금계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의료원 ○○○○부 △△직 ♣♣♣는 아래 [표2]와 같이 ◎◎◎◎ 사업비 24년도 계좌, 25년도 계좌에서 25. 2. 7.부터 25. 11. 24.까지 총 13차례, 자부담 사업비 중 일부 32,306,810원을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의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 용도로 사용하였다.

[표] 사업비를 개인계좌로 이체한 내역
“생략”

이후 의료원 ○○○○부 △△직 ♣♣♣는 2025. 7. 31. 3,300,000원, 2025. 11. 28.부터 2025. 12. 11.까지 3차례 16,100,000원을 사업비 계좌로 상환하였으며 의료원 현지감사 시작일 2026. 3. 23. 직전 2026. 3. 20. 12,906,810원을 사업비 계좌에 입금하여 ☆☆ 계좌로 부적정하게 이체한 금액 모두를 상환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안동의료원장은

① 앞으로 관련 법규정을 준수하여 지출내역을 회계시스템에 등록하고 보통예금 계좌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② 사업비를 ☆☆ 용도로 사용한 행위는 「형법」 제◇◇◇조에 따른 ▽▽에 해당하므로, 관련 사항에 대하여 즉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③ 관련자 중 JJJ, KKK, LLL, MMM는 **훈계**(의료원 규정상 경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④ 관련자 NNN는 의료원 「인사규정」 제51조에 따라 **중징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마약류 관리 업무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안동의료원
관 계 부 서 ○○○○○
내 용

경상북도 안동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33조(마약류관리자)에 따라 소속 △△ 2명을 마약류관리자⁶⁾로 지정하여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관리하고 있다.

1. 마약류관리자의 업무 소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의료기관용)」(이하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라 한다)의 마약류관리자의 업무에 따르면 마약류관리자는 병원 내 마약류 관리에 관한 총괄책임자로서, 병원 자체 마약류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규정에 따라 병원 내 모든 마약류취급자(관리보조자 포함)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그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마약류 관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병원 내에서 업무분장을 명확히 해야하고 마약류관리법 제50조(마약류취급자와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교육)에서 정하는 마약류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하며,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에 따라 관리보조자를 정하여 일부 관리업무를 분장하여 관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6)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그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수수(授受)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진 자

[표 1] 마약류 관리법, 마약류 지침에 따른 마약류 취급자 지정 현황

마약류 취급자		
마약류 관리자	마약류 관리보조자	마약류 취급의료업자
마약류 관리업무 총괄 책임자 (병원 내 약사)	마약류 관리자와 마약류 취급의료업자를 보조하고 마약류를 운반·보관·관리하는 자 (약사, 간호사, 기타 원내 종사자)	환자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류를 처방하는 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한 마약류관리법 제15조(마약류의 저장)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 승인자 등은 마약류를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저장하여야 하고 마약은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견고한 장소에 저장하여야 한다.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에는 마약류 도난·유출 방지 등 준수사항에는 마약류 저장시설에는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자가 지정한 종사자 이외의 사람은 출입시켜서는 아니되며, 저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점검하여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비치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의료원에서는 비상 마약류를 취급·관리하는 각 병동(☆☆실, ∇∇∇실, ♠♠♠실, ◇◇◇◇병동, ◎◎실, ◇◇병동, □□병동, ♠♠병동)의 소속 ♠♠♠에 대해 마약류관리보조자를 지명하거나 마약류 관련 업무분장을 시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감사대상 기간(2023. 10월 ~ 2026. 1월) 중 의료원의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와 같은 기간 동안의 해당 병동 직원들의 근무상황부를 대조한 결과 3개 병동에서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상 점검자와 해당 직원의 근무 상황부가 일치하지 않은 사실(연차를 사용한 직원이 점검자로 기재)이 [표 2]와 같이 확인되었다.

[표 2] 부서별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자 - 근무상황부 불일치 내역

(단위 : 건)

연도	부서	발견건수	비고
합계		29	
2024년	▲▲부	1	연차(휴가) 직원이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에 점검자로 기재
	♠♠실	16	

연도	부서	발견건수	비고
2025년	▲▲부	1	
	♣♣실	10	
	☆☆☆실	1	

※ 의료원 제출자료 재구성

2. 잔여 마약류 폐기절차 부적정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제21조(몰수 마약류의 폐기방법) 및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에 따르면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는 외부로 유출 또는 불법 사용되지 않도록 가급적 2주 이내에 법령에서 정하는 폐기방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폐기하며,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중화, 가수분해, 산화, 환원, 회석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변화시켜 폐기하고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변화한 상태(회석, 개봉된 상태로 의료폐기물 상자에 버리기 등)를 사진으로 남겨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감사대상 기간에 해당하는 의료원의 잔여 마약류 폐기 결과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사진 1]와 같이 환자에게 투여하고 남은 마약 앰플을 새 주사기에 옮긴 후 해당 환자의 투약 정보가 기재된 라벨(폐기마약류의 종류와 잔여 용량 표기)을 부착하여 전용 용기에 밀폐하여 폐기해 오고 있었다.

[사진 1] 잔여 마약류 폐기 실태

“생략”

그 결과 폐기대상 마약류가 마약이 아닌 것으로 변화되지 않은 채 외부로 유출되거나 불법으로 사용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안동의료원장은

① 마약류 관리에 대한 업무분장을 실시하고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 시에는 실제

근무자가 점검을 수행하도록 하시기를 바라며,

- ② 잔여 마약류 폐기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변화시킨 후 폐기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겸직 허가 및 복무관리 업무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안동의료원
관 계 부 서 ○○○○○
내 용

1. 겸직 허가 부적정

경상북도 안동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은 「경상북도 안동의료원 정관」 제6조(겸직금지) 및 「복무규정」 제8조(겸업금지)에 따라 소속 직원의 겸직에 대해 관리하고 있으며, 감사기간(2023년 10월 ~ 2026년 1월) 중 의료원 임직원의 겸직 신청에 따른 허가 내역은 [표 1]과 같다.

[표 1] 겸직 허가 내역

(단위 : 건)

구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겸직허가	13	-	7	5	1

※ 의료원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임직원의 겸직 제한)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상근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다만 상근임원이 임명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의료원 인사·복무를 총괄하는 ○○부에서는 [표 2]와 같이 소속직원의 겸직허가 사항에 대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허가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직원의 겸직에 대해 전혀 인지하고 있지 않다가 해당 직무가 시작되고 난 후에야 그 사실을 인지하여 겸직을 허가하였고 2024. 7. 3. ☆☆☆☆ 협력의사(▼▼▼) 추천과 관련하여서는 겸직 허가의 어떠한 검토 절차 없이 ◇◇◇ 보건소에 ▼▼▼ 추천 공문으로만 갈음하여 겸직 허가를 하였다.

[표 2] 겸직 허가 부적정 내역

성명	소속(당시)	겸직기관 및 직무	허가기간	부적정사유
△△△	◆◆부	♣♣♣♣대학교 겸임교원	2024. 3. 1. ~ 2025. 2. 28	사후 허가 (2024. 4. 22.)
◎◎◎	♣♣부	♣♣대학교 겸임교원	2024. 3. 1. ~ 2025. 2. 28	
☆☆☆	♣♣부	♣♣대학교 겸임교원	2024. 3. 6. ~ 2024. 12. 11	
◆◆◆	♣♣부	◇◇◇ ♣♣♣♣♣ ▼▼▼	2024. 7. 1. ~ 2026. 6. 30	겸직 허가 절차 누락
♣♣♣	♣♣♣♣	△△대학교 ○○대학 ♣♣♣♣♣♣♣♣원	2024. 7. 29. ~ 2024. 11. 1	사후 허가 (2024. 8. 14.)

※ 의료원 제출자료 재구성

2. 휴직자 복무관리 소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휴직 중인 소속 직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 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소속 직원이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도록 복무를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79조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휴직 공무원이 휴직의 목적외 사용을 하지 않도록 휴직 전 복무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휴직기간에는 그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고 이 경우 복무상황 보고서의 허위 여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여야 하며, 정기점검은 매

반기별로 하고 휴직 중인 공무원은 휴직 기간 중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를 첨부하여 임용권자에게 복무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의료원에서는 소속 직원이 휴직 기간 중 휴직의 목적 달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는지,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을 하였는지 등을 점검하는 등 휴직자 복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의료원에서는 감사대상 기간(2023. 10월 ~ 2026. 1월) 중의 휴직한 직원 50명에 대하여 휴직 중 금지행위 여부, 휴직 목적 외 사용여부 등에 대한 점검이 한 차례도 없었다.

3. 휴직자 결핵검진 미실시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7)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학교의 장 등은 그 기관·학교 등의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휴직·과건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게 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업무에 종사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을 실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의료원에서는 소속 직원이 6개월 이상 휴직 등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7) 제11조(결핵검진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학교의 장 등은 그 기관·학교의 장 등은 그 기관·학교 등의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2.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자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등

그러나 의료원에서는 육아휴직으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복직한 직원(33명)에 대하여 결핵검진을 실시하지 않았다.

4. 근태관리 부적정

의료원에서는 소속 직원의 출·퇴근 등 복무 관리를 위하여 2022. 7. 8.부터 근태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전 직원에 대한 지문 등록을 통해 근태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위 기관 복무관리를 총괄하는 ○○부는 출입관리시스템 도입 당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출입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출퇴근 등록하도록 게시판에 공지하고 안내문자를 발송하였으며, 의료원의 통상 근로자의 업무 시작시간은 8시 30분, 업무 종료시간은 17시 30분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복무규정」 제36조에 따라 병원업무 형편상 시간외 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가 필요한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주 12시간 연장 근무를 명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원에서는 소속 직원이 출퇴근, 초과근무, 휴일근무 등을 할 때에 출입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등록하는지, 초과근무 수당은 적법하게 지급되었는지 등 기관 복무상황 전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복무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기간 중 의료원에 근무중인 직원 325명의 근태관리 현황을 점검한 결과 [표 3]의 4개 직군, 34명의 직원에 대해서 출입관리시스템을 통한 근태관리를 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관련한 복무 점검이나 지침 마련 등 내부통제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표 3] 직종별 출입관리시스템 미사용 현황
“생략”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안동의료원장은

- 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휴직자에 대한 복무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복직자에 대해서는 결핵검진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전 직원에 대하여 출입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출·퇴근 및 연가 사용 등 복무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④ 외부강의 등에 따른 검직 허가는 관련 규과 절차를 정비하여 병원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진료비 미수금 징수 관리 소홀
소 관 청 경상북도안동의료원
관 계 부 서 ○○○○○
내 용

경상북도 안동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안동의료원 회계규정」(이하 ‘회계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공정 타당하고 일관성 있는 회계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회계규정 제86조에 따르면 법령 또는 계약 등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입 기한이 정하여진 수입금을 납입고지할 때에는 납입개시 5일 전에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야 하고, 납입고지서의 납입기한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르면 납입기한이 경과하여도 납입하지 아니하는 납입의무자에 대하여는 납입기한 경과 후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수차례의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도 수입금이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자 또는 재정보증인의 재산 상황 등을 조사하여 제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회계규정 제92조에는 채권의 포기 또는 시효⁸⁾의 완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결정액에 대한 불납금을 결손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징수관은 불납결손의 사유를 명백히 갖추어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결손처분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의료원에서는 납입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진료비 등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해 납입기한 경과 후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행하여야 하고, 이후에도 불납한 경우 재산 상황 등을 조사하여 제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채권을 포기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손처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감사기간(2023. 10월 ~ 2026. 1월) 중 의료원의 의료수입 미수금 관리에 실태에 대해 확인한 결과, [표 1]과 같이 미수금이 발생하였으나, 규정에 따른 독촉 절차(독촉장 발행, 재산상황 조회, 제소 등)를 소홀히 하였으며, 원무관리 시스템상의 미수금과 수기 관리하는 미수금 관리대장의 미수금 합계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등 의료원의 미수금 관리 및 대응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표 1] 의료수입 미수금 현황(2023.10월 ~ 2026. 1월)

(단위 : 원)

구 분	합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금 액	40,560,030	101,850	2,577,730	27,205,540	10,674,910

※ 의료원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미수금 관리 업무의 기준이 되는 의료원 회계규정이 2000. 12. 30. 이후 정비되지 않아 규정에 따른 현실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함에도 업무의 세부 기준이 되는 별다른 규칙이나 지침을 제정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8) 안동의료원 회계규정 제92조제2항에는 '결손의 시효는 지방세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소멸시효 기한을 3년으로 적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안동의료원장은

- ① 미수금 징수 관리의 적법한 업무 추진을 위해 의료원 회계규정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
- ② 진료비 등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해 전화상 납부 독촉 이외에 독촉장 발송, 재산조사, 제소 등 규정에 명시된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안동의료원
관 계 부 서 ○○○○○
내 용

안동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 ○○○부에서는 「회계규정」 제2조에 따라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경상북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였다.

[표 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현황

(단위 : 천 원)

연번	계약명	계약금액	계약일	계약업체	평가위원 구성
1	□□□□□□ 구매 및 제작	372,755	2026. 1. 27.	(주)△△△△	7인 (교수 5, 공무원 1, 단체 1)

※ 의료원 제출자료 재구성

1. 정량평가 항목별 배점한도 초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7장 제3절 4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는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에서 가감조정 하는 등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세부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아래 [표 2] 와 같이 정량적 평가분야의 항목별 배점한도⁹⁾는 전체 배점의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표 2]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구 분		평가항목 (예시)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분야 (계량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경험(실적) ▪ 경영상태 ▪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 ▪ 신인도 ▪ 용역근로자보호지침 ▪ 그밖에 필요한 사항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담당자(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 <u>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까지 가능</u>
	정성적 평가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지식능력 ▪ 사업수행계획 ▪ 지원기술·사후관리 ▪ 상호협력 관계 ▪ 그밖에 필요한 사항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위원이 평가

따라서 의료원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규정된 평가기준에 따라 협상 적격자를 선정해야 하며, 특히 정량평가는 세부항목 배점이 전체배점의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의료원 ○○부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이동진료차량 구매 및 제작”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량적 평가분야의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 한도(20점)의 30%(6점)까지 부여하여야 함에도 재무상태(신용평가등급)의 배점 한도를 10점으로 부여하여 제안서 평가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그 결과 배점한도를 초과한 특정 평가항목으로 인하여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9)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별표 1]

2. 제안서평가위원 예비명부 3배수 미작성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제4절 1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이해관계자를 제외한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가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20% 이상 선정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의료원에서는 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구성 시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가 미리 정한 심사위원수 만큼 번호를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도의 위원을 20% 이상 선정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의료원 ○○부에서는 “□□□□□□ 구매 및 제작”에 대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함에 있어 평가위원 예비명부 중에서 추첨을 통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제안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야 함에도 위 [표 1]과 같이 예비명부 작성 없이 안동시 내 전문가¹⁰⁾를 평가위원으로 선정하였다.

그 결과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법령의 취지를 훼손하여 계약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안동의료원장은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10) 안동시 소재 대학교 교수 5명, 안동♀♀♀♀♀ 팀장 1명, (사)◆◆◆◆◆사무총장 1명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소규모 공사 계약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안동의료원
관 계 부 서 ○○○○○
내 용

안동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 시설관리부에서는 「회계규정」 제2조에 따라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경상북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의료원 소유의 부동산 등 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소유 건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1. 수의계약 부적정

「지방계약법」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고,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3절에 따르면 1인으로부터 견적을 받는 추정가격¹¹⁾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등¹²⁾을 제외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하려고

11)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나 해당 목적물의 규격서·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관급자재로 공급된 부분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

할 때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¹³⁾에 일정기간(3일 이상)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하고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예정가격의 89.745%¹⁴⁾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가. 공사를 물품으로 발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1절 10에 따르면 계약 담당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공사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목적물이 공사가 명백함에도 물품·공사 또는 용역·공사의 혼재된 계약으로 판단하여 물품 또는 용역으로 발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르면 건설업(경미한 건설공사¹⁵⁾ 제외)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¹⁶⁾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3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의료원에서는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계약목적물의 유형을 판단하여 공사를 물품 또는 용역으로 발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공사 예정 금액이 1천5백만 원 이상인 전문 공사를 계약할 경우에는 해당 공사 내용에 상응하는

12)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청년창업기업 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추정 가격이 5천만원 이하

13) 나라장터(G2B)

14) 87.745% → 89.745% [2025. 7. 8. 시행, 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15)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공사예정금액”이라 한다]이 5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16)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표 1] 물품계약 현황

(단위 : 천 원)

사업명	계약금액	계약일	계약상대자	필요업종
♥♥병동 리모델링(타일) 물품구매	15,000	2024. 11. 6.	♣♣♣♣♣	도장·습식·방수· 석공사업

※ 의료원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도 의료원 ○○○○부에서는 위 [표 1]과 같이 계약금액이 15,000천 원 이상인 “♥♥병동 리모델링(타일) 물품구매”를 추진하면서 계약목적물의 유형이 바닥타일을 교체하는 리모델링 공사임에도 해당 공사를 무자격업체인 ♣♣♣♣♣ (대표 ◆◆◆)와 2024. 11. 6.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물품으로 발주하였다.

그 결과 적정한 전문건설업종을 등록한 타 업체의 공정한 사업참여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자격이 없는 업체의 시공으로 인한 부실 공사의 우려를 낳게 하였다.

나. 사회보험의 보험료 등 미반영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르면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사회보험의 보험료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고용보험은 총 공사금액[(도급금액 + 관급재료)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 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건설공사에, 산업재해보상

보험은 모든 건설공사에,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아래 [표 2]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¹⁷⁾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공사종류	구 분	대 상 액*			비 고	
		5억 미만	5억 이상 50억 미만			50억 이상
			요일	기초액		
건축공사		3.11%	2.28%	4,325	2.37%	
토목공사		3.15%	2.53%	3,300	2.60%	
중건설공사		3.64%	3.05%	2,975	3.11%	
특수건설공사		2.07%	1.59%	2,450	1.64%	

* 대상액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 및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 훼손 및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¹⁸⁾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의료원에서는 건설공사의 발주 및 계약을 추진하면서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 사회보험의 보험료 및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 등을 관련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17) 도급자관급 미포함 공사 : (재+직노) × 울 + 기초액

도급자관급 포함 공사 : (재+직노+도급자관급)×요일+기초액과 [(재+직노)×요일+기초액]×1.2 중에 작은 금액

18)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 : 환경보전비(직접공사비 부분+간접공사비 부분)+폐기물 처리비

간접공사비 부분 : 직접공사비 × 요일(재개발 및 재건축 주택 0.7, 신축 주택 0.3, 주택 외 건축 0.5, 전문 및 개보수 공사 0.3)

하며,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¹⁹⁾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의료원 ○○○○부에서는 아래 [표 3]과 같이 “◇◇실 ♠♠ 및 ♣♣ 보완공사” 등 2건의 공사를 추진하면서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로서 사회보험의 보험료(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관리비를 반영하여야 함에도 미반영하는 등 공사 원가계산 작성을 소홀히 하였다.

[표 3] 사회보험의 보험료 등 미반영 공사 현황

(단위 : 천 원)

연 번	사업명	계약 상대자	공사기간	미반영 항목	계약금액		재산정 금액	
					총금액	보험료 등	총금액	보험료 등
계	2건				42,620	0	45,985	3,362
1	◇◇실 ♠♠ 및 ♣♣보완공사	(주)♣♣♣♣	2024. 3. 4. ~ 2024. 3. 11.	- 사회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환경보전비	21,620	0	23,306	1,686
2	♥♥병동 리모델링 공사 (미장)	(주)♠♠♠♠	2024. 11. 7. ~ 2024. 11. 27.	- 사회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환경보전비	21,000	0	22,679	1,676

※ 의료원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근로자의 고용안전과 산업재해 안전관리 및 공사현장의 환경관리를 위한 관련 법령의 취지를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사회보험의 보험료 등을 재산정하여 반영한 결과 해당 공사의 추정가격이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을 초과함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공사임에도 임의로 선정한 계약상대자와 수의계약이 체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안동의료원장은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19) 여성기업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 원 초과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건설공사 감독 및 준공 업무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안동의료원
관 계 부 서 ○○○○○
내 용

안동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 시설관리부에서는 「회계규정」 제2조에 따라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경상북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소유 건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를 추진하였다.

[표 1] 공사추진 현황

(단위 : 천 원)

연번	공사명	도급자	계약금액	계약일	공사기간	비고
1	□□□□□□ 진료공간 확충공사(건축)	♣♣♣♣♣ (주)	670,750	2024. 5. 1.	2024. 5. 28. ~ 2024. 9. 24.	
2	□□□□□□ 진료공간 확충공사(전기)	☆☆☆☆	245,139	2024. 5. 24.	2024. 5. 28. ~ 2024. 9. 24.	
3	□□□□□□ 진료공간 확충공사(통신)	주식회사 ♠♠	113,382	2024. 5. 24.	2024. 5. 28. ~ 2024. 9. 24.	
4	◆◆◆ ◇◇◇ 개·보수 공사(건축)	▲▲▲▲▲(주)	251,575	2025. 5. 9.	2025. 5. 19. ~ 2025. 6. 19.	

※ 의료원 제출자료 재구성

「지방계약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공사 등의 감독을 하는 자(감독자)는 감독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검사를 하는 자(검사자)는 3천만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르면 감독 또는 검사의 결과 계약이행의 내용이 당초의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감독조서 또는 검사조서에 적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원에서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공사 감독자는 계약서, 설계도서, 품질관리 기준에 따른 시험성적서 등에 따라 시공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감독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는 검사자를 임명하고 검사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현장에 공사감독자 및 현장대리인을 입회하게 하여 계약서,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에 따라 준공검사를 완료한 후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계약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의료원 시설관리부에서는 “□□□□□□ 진료공간 확충공사(건축)” 등 4건의 공사를 추진하면서 감독조서와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준공 처리 후 공사대금을 지급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해당 건설공사가 설계도서나 계약 내용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을 위한 절차를 누락하여 하자보수의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였으며, 부실 공사의 우려를 낳게 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안동의료원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관련자 000은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